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30

제출일자 : 2018. 03.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제외 기준을 완화하여 피해면적에 상관없이 일정 피해보상액 이상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며,

나.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 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종결 시에는 해산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에 대하여 보상금을 늘리고 원활한 포획활동이 되도록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농작물 및 인명의 피해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제외 기준 변경(안 제9조)

- 피해면적 하한기준을 삭제하여 기준 완화
- 농작물 피해보상금의 중복지원 방지

나.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13조)

-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종료될 때에는 자동 해산

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활동 지원(안 제17조)

- 포획단의 보상금 상한액 설정 및 변경
- 포획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 피해 입은 농민에게 동물기피물품 배부

라. 상위 법령(규정 등) 조항 준용, 관계 법령명칭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 30.(화) ~ 2018. 2. 19.(월)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보상 제외)”를 “(인명피해 보상 제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피해 예방 활동”을 “피해예방시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상 제외)”를 “(농작물피해 보상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제11조제4항 중 “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인명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를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을 두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3조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위원회는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해당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이 완료된 때 자동 해산된다.

제17조의 제목 “(인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단 설치·운영 등)”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획보상금은 연간 최대 250만원까지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포획보상금 : 멧돼지 50,000원(마리 당), 고라니 30,000원(마리 당)

제1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군의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자에게 동물기피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피해 실태 조사서

<table>
<tr><td colspan="3" rowspan="2">피 해 자</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피해조사결과</td><td rowspan="2">인명</td><td>피 해 내 용</td><td></td><td>가 해 동 물</td><td colspan="2"></td></tr>
<tr><td>피 해 경 위</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농작물</td><td>지번</td><td>피해 작물</td><td>가해야생 동물명</td><td>경작면적 (㎡)</td><td>피해면적 (㎡)</td><td>피해율 (%)</td><td>보상단가 (원/㎡)</td><td>피해액 (원)</td><td>감소 (낙과)율 (%)</td><td>피해보상 금액 (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80%(수확)
60%(중간 생육)
40%(파종)</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 rowspan="3">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 여부</td><td colspan="5">해 당 유 무</td></tr>
<tr><td>해당</td><td colspan="4"></td></tr>
<tr><td>해당없음</td><td colspan="4"></td></tr>
<tr><td>참고사항</td><td colspan="7"></td></tr>
<tr><td>비 고</td><td colspan="7">o 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보상단가
o 피해보상금액 = 피해액 × 감소(낙과)율</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7">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현장사진</td></tr>
</table>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달성군수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제5조(인명피해 보상 제외)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보상기준) ① (생 략) ② 울타리, 방조망(防鳥網), 경음기(警音器) 설치 등 피해 예방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의 과수 피해 보상은 피해액의 50%까지만 지급한다.	제8조(보상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피해예방시설을 ----------.
제9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 3. (생 략) <신 설>	제9조(농작물피해 보상 제외) ----------. 1.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4. 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제11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환수 등 대장관리) ① (생 략) ②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인명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야 하며, 대장 간소화를 위하여 전산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환수 등 대장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을 두고** ----------.
제13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⑦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생 략) **<신 설>**	제13조(위원회 설치 등) ① -------- ---------- **설치·운영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삭 제)** ⑧ (현행과 같음) **⑨ 위원회는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해당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이 완료된 때 자동 해산된다.**
제17조**(인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단 설치·운영 등)** ① (생 략)	제17조**(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군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총포의 소지가 허용되고, 선발 시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정신적으로 총포사용에 문제없는 자 중에서 포획단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
③ 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획보상금은 연간 최대 250만원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1. 포획 보상금 : 멧돼지, 고라니 30,000원(마리 당)	1. 포획보상금 : 멧돼지 50,000원(마리 당), 고라니 30,000원(마리 당)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에 필요한 물품
<신 설>	④ 군수는 군의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자에게 동물기피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현 행

[별지 제3호]

피해 실태 조사서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조사결과	인명	피해내용		가해동물	
		피해경위			
	농작물	농지소재지	읍·면 리 번지	가해동물	
		피해작물		평균피해율	%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보상제한여부	인명	수렵활동 중의 피해 해당	여( ), 부( )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 해당	여( ), 부( )
		금지구역 무단 입산 해당	여( ), 부( )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 해당	여( ), 부( )
		본인 부담금 10만원 미만 해당	여( ), 부( )
		기타 보험금을 받은 경우	여( ), 부( )
	농작물	피해면적 165㎡ 미만 해당	여( ), 부( )
		총 피해액 10만원 미만 해당	여( ), 부( )
		경작금지지역 해당	여( ), 부( )
그 밖의 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달성군수 귀하

※ 조사방법
1. 피해 작물별로 작성
2. 현장 사진 붙임

개 정 안

[별지 제3호]

피해 실태 조사서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조사결과	인명	피해내용		가해동물	
		피해경위			

피해조사결과	지번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명	경작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보상단가(원/㎡)	피해액(원)	감소(낙과)율(%)	피해보상금액(원)
농작물						80%(수확) 60%(중간생육) 40%(파종)				

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 여부	해당 유무	
	해당	
	해당없음	
참고사항		
비 고	o 피해액 = 피해면적 × 피해율 × 보상단가 o 피해보상금액 = 피해액 × 감소(낙과)율	
첨부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현장사진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리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달성군수 귀하

참고 1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조례제정) ①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규정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